

울산광역시 복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183 호 2019. 7. 4.(목)

조 례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089호[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090호[울산광역시 복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4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091호[울산광역시 복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9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092호[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093호[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7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094호[울산광역시 복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30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095호[울산광역시 복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8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096호[울산광역시 복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44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097호[울산광역시 복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50
- 울산광역시 복구 조례 제1098호[울산광역시 복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55

규 칙

-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38호[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65
-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39호[울산광역시 복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72
-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40호[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78
-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41호[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0
-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42호[울산광역시 복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87

훈 령

- 울산광역시 복구 훈령 제260호[울산광역시 복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92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54호[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96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57호[하천 점용 허가 고시]..... 97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58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98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59호[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100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60호[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 고시]..... 10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9-161호[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103

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홍보실(☎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89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07명”을 “61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93명”을 “601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총 계	615	-				
정무직계	1	-				
구청장	1	1	-	-	-	-
일 반 직 계	613	-				
3급	1	1	-	-	-	-
4급	4	3	-	1	-	-
5급	37	22	3	3	1	8
6급 이하 계	571	-				
별 정 직 계	1	-				
6급 상당 이하 계	1	-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2019년 기준인력 범위 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사업, 미세먼지 저감 대책, 개인소득세 업무 등 국가시책 추진 인력 배치를 위한 정원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정원의 총수 : 607명 ⇒ 615명(증 8) (안 제2조 관련)
 - 집행기관의 정원 : 593명 ⇒ 601명(증 8)
- 나.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3 관련)
 - 6급 이하 : 563명 ⇒ 571명(증 8)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9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사업을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기반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산업기반시설, 생활기반시설, 연구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
 - 나. 공공기관과 교육기관 및 문화, 관광, 체육관련 시설과 사업
 -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리를 도모할 수 있는 시설이나 사업 등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 “유치활동 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기관·시설 등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하거나 국가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반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각계각층의 인사가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지역발전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및 업무에 관련되는 국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반시설사업 유치활동 등을 위해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기반시설사업을 지역 내에 유치하거나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제반활동 등에 대해,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제1조 ~ 제2조)
- 나. 위원회(설치, 기능, 구성, 임기, 회의 등)에 관한 사항(제3조 ~ 제10조)
- 다. 관계기관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제11조)
- 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제12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91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동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하여 주민자치 활동과 계획 등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자치계획”이란 주민자치회가 수립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하는 주민자치 및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학교”란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활동에 관한 기본교육 과정을 말한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4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회의 자율적인 조직과 운영을 위한 업무
2.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기타 각종 교육, 행사 등 주민자치 업무
3.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동 행정사무
의 수탁 처리

제3장 주민자치회 구성

제5조(위원의 정수) 위원은 25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3. 해당 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원·직원

② 제1항 각호에도 불구하고 다른 주민자치회의 위원 및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
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이거나 선정
된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조(위원의 선정) ① 위원은 공개 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를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
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5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 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첨 운영위원
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위원 추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해당 동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른 명부를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결과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자의 순위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7조 및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위촉

③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번째 연임하고자 하는 위원은 제6조의 자격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1.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활동 참여
2.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1개 이상 참여 및 활동

②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된 것으로 본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이 없거나 상실한 경우
3.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4.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거나 선거운동을 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한 경우
2. 직무태만이나 사익추구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으며, 주민자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대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주민자치회의 운영

제1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3. 동별 자율적인 운영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 1명과 부회장 2명을 두며,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감사) ① 주민자치회는 그 회계와 사업 집행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 2명을 두며, 감사는 위원 중에 호선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감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연 1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사무국장으로 선임하여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사무국장과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위원 중 호선한다. 2명 이상 경쟁 시 무기명투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1회 이상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할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⑥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의) ①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동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② 자치회장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과 동장에게 회의개최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주민자치회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10일 이내에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제19조(의견청취 등)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장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제20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연 1회 이상 주민총회를 개최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총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총회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평가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 제시
3. 자치계획의 결정
4. 그 밖의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 개최일 1개월 전부터 주민총회 안건의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동장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 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제21조(자치계획의 수립 및 결정)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계획안을 수립한다.

②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정기회의 의결로 입안되며,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결정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자치계획안을 결정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자치계획안을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치계획안에 대한 검토

및 반영 여부를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자치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지원하여야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자치계획안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자치계획의 구성) 자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세부 계획으로 구성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마을발전 및 활성화 계획
3. 동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제6장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등

제23조(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동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

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25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26조(보험) 구청장은 제4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

제3조(위원의 선정에 관한 특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되는 주민자치회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 중인 위원 중 주민자치학교 과정을 수료한 위원을 우선 선발한다.

제4조(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의 재산 등을 승계하며, 종전의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지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확대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등 운영 체계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용어 정의 신설 및 변경(제2조, 제16조)
- 나. 주민자치회 기능 강화(제4조)
- 다. 주민자치회 구성 규모 및 위원의 자격, 선정 및 위촉, 임기 정비(제5조 ~ 제9조)
- 라. 위원의 해촉 조항 정비(제11조)
- 마. 분과위원회 조항 정비(제17조)
- 바. 주민총회·자치계획 조항 신설(제20조 ~ 제22조)
- 사.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 내용 정비(제23조)
- 아. 보칙 보험 조항 신설(제26조)
- 자. 부칙 정비(부칙 제1조 ~ 제4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92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다만,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재직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민간 경력에 따라 별표 4와 같이 연가를 가산한다.

재직기간	연가일수(일)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
1년 이상 2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14
3년 이상 4년 미만	15
4년 이상 5년 미만	17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21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제6항 구청장은 공무원에게 연가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재직기간	연가일수(일)
1년 미만	5
1년 이상 2년 미만	6
2년 이상 3년 미만	7
3년 이상 4년 미만	8
4년 이상	10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삭제한다.

제24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3”을 “제7조의7”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30일의 학습휴가”를 “50일의 장기재직휴가”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10일간의 학습휴가”를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로 한다.

별표 3의 출산의 일수(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대 상	일수(일)
결 혼	본 인	5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 산	배우자	10
입 양	본인	20
사 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2
탈상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1

* 비고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
- 2019. 4. 29.자 울산광역시 북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북구지부 간 단체협약 사항으로 학습휴가 명칭을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장기재직휴가로 변경하며, 직원의 사기진작과 재충전의 기회를 높이기 위해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상위법령(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중복되는 조항 삭제
 - 현행 조례 제21조제1항·제2항
- 나.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16조의2)
- 다. 저연차 공무원 연가일수 확대(제19조)
- 라. 연가 당겨쓰기 사유 제한 폐지 및 사용가능 일수 세분화(제20조제6항)
- 마. 학습휴가 명칭 변경 및 일수 확대(제24조제2항제4호)
 - 명칭 : 학습휴가 → 장기재직휴가

• 일수 : (현행)30일 → (개정)50일

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별표3) : (현행)5일 → (개정)10일

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용어 정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93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유재산 및 물품”을 “공유재산”으로 한다.

제3조제4항 본문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 2천만원 이하(특별시·광역시 지역은 5천만원 이하)”를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 5천만원 이하”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4. 행정재산 중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해당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기준가액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제4조제2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대부재산관리”를 “공유재산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모든 사항”을 각각 “사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29조제1항제20호 또는 제25호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제39조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1)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한 경우와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 기업, 마을기업이 공유재산 대부 신청 시 대부료의 50/10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 신설(제31조)

나.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미비점 보완

- 1) 공유재산심의회 위촉위원 연임 제한 규정 삭제(제3조제4항)
-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추가(제39조)
 -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명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한 용어 정비 등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94호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효율적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유치”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안으로 기업의 본사, 연구소, 공장 등의 이전이나 신설·증설에 대하여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2. “투자유치기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다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5.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6.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 안에서 물품을 제조·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7.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8. “증설”이란 건축면적 또는 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9.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 단지를 말한다.

제3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 기본계획
2. 투자유치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우수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한 활동과 연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투자유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1.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2. 기업체의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 중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등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투자유치지원단 설치 및 운영) ① 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협의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투자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투자유치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지원단장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투자관련 인가·허가 등 민원사무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투자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 조사 및 처리

3. 투자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 및 행정 협조

4. 그 밖에 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9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 및 통상 전문가를 구 투자유치 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자문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및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투자유치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유치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유치 사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투자유치기업의 지정) 구청장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장시설, 본사, 연구소(이하 “공장시설 등”이라 한다)를 산업단지로 이전, 신설, 증설하는 기업

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12조(투자유치기업의 재정지원)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투자유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 및 시설확보를 위한 금융기관 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2. 고용창출 촉진을 위한 고용보조금
3. 투자유치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4. 판로개척비

제13조(특별지원) 구청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투자기업과 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소기업, 벤처기업, 연구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세 감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은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및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중복지원의 금지)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이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16조(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울산광역시 복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기업의 효율적 투자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고도화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제1조 ~ 제2조)
- 나. 투자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규정(제3조 ~ 제7조)
- 다. 투자유치지원단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제8조)
- 라. 투자유치자문관 위촉 및 운영 관련 규정(제9조)
- 마. 투자유치 사무의 위탁 근거 관련 규정(제10조)
- 바. 투자유치기업 지정대상 선정 및 재정지원 시책 규정(제11조 ~ 제12조)
- 사. 대규모 투자유치기업 등 특별지원 관련 규정(제13조)
- 아. 산업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관련 규정(제14조)
- 자. 중복지원의 금지, 포상금 지급, 타 법률·조례의 준용, 시행규칙 근거(제15조 ~ 제18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꽃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응권 (인)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95호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들의 정서함양과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 할 수 있도록 꽃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꽃도시 조성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를 꽃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구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꽃가꾸기”란 주택, 상가, 마을 등의 공간에 꽃을 심고 가꾸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꽃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
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꽃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
진할 수 있다.

1. 꽃도시 조성 사업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꽃동산·꽃거리·꽃길·꽃정원 조성 등에 관한 사업
3. 꽃도시 조성·확산을 위한 콘테스트 및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4. 꽃도시 조성 캠페인 등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꽃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확산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참여 활성화로 꽃도시 조성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꽃도시 조성 관련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꽃도시 조성 사업 관련 주요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꽃도시 조성 사업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꽃도시 조성 사업 선정
3. 꽃도시 조성 관련 콘테스트 등 심의
4. 그 밖에 꽃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도시디자인, 공원녹지, 꽃도시 조성, 주택 등의 업무 담당 부서장: 4명 이내
2. 조경 관련 분야 전문가: 3명 이내
3.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2명 이내
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명 이내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꽃도시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꽃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꽃도시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 정의 등(제1조, 제2조)

나. 꽃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및 확산 지원(제4조, 제5조)

1) 조성사업의 범위에 관한 규정(제4조)

2) 확산 지원(제5조)

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제6조 ~ 제8조)

1)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제6조)

2) 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 등(제7조, 제8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 동 권 (인)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96호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바. 경관현황분석 내용

사. 경관기본구상 계획

2.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제18조제1호 중 “건축물을”을 “건축물은”으로 한다.

제1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19조제3항제2호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1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 1. 울산광역시 경관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 2. 울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경우
- 3.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제19조제5항 중 “별표 2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를 “별표 3의 경관협의 대상 건축물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관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른다.

제20조제3항제3호 중 “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를 “옥외광고 · 조명 · 범죄예방 ·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전문가 등 관련 분야”로 한다.

제2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⑤ 간사는 도시경관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의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1(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경관 심의는 구역이 지정된 후부터 시행한다.

[별표1]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18조제3호 관련)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4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기타지역은 6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4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3층 이상의 신축 건축물

[별표 2] 경관 자문대상 시설물(제19조제3항제2호 관련)

건축물

분류	시설물 종류
공공 건축물	가. 업무시설(공공기관 청사, 동 행정복지센터) 나. 공공도서관 다. 문화 및 체육시설 라. 복지시설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다만, 타 위원회에서 경관분야 심의를 받거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도시시설물

분류	시설물 종류
도로시설물	가. 교량 나. 고가차도 다. 지하차도 라. 보도
공간시설	가.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나. 그 밖에 위와 유사한 것
공공미술	가.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비, 시계탑, 조명탑 나. 단위면적이 150㎡ 이상인 벽화 등 각종 색채사업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각 시설물에 대한 야간경관개선사업 포함

※ 기성품, 현상공모(설계경기) 및 협상에 의한 계약 등에 의한 당선작은 자문대상에서 제외

[별표 3] 경관 협의 대상 (제19조제5항 관련)

□ 건축물

분류	시설물 종류
산업로	가. 폭 15m 이상 도로변(단, 산업로의 경우 도로변 완충녹지도 도로로 간주) 3층 이하 또는 연면적 1,000㎡ 미만의 신축 건축물 나. 그 외 기타지역은 5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호계로	3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강동해안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매곡천	2층 이하의 신축 건축물

□ 공공시설물

분류	시설물 종류
휴게시설물	벤치, 파고라
위생시설물	휴지통, 공중화장실, 음수대
서비스시설물	자전거보관대, 공중전화부스, 관광안내소
판매시설물	가로판매대
통행시설물	보도블럭, 버스/택시정류장, 보도육교
녹지시설물	가로수 보호틀/덮개, 가로수보호대, 가로화분대
보호시설물	볼라드, 방호울타리, 방음벽, 석축/옹벽, 가설울타리/가림막, 중앙분리대
조명시설물	가로등/보안등, 보행등
교통시설물	신호등
정보시설물	관광안내도/안내표지/문화재안내판, 각종안내판, 사설안내표지, 현수막게시대, 공공계시판, 주차안내/요금표지/관리소
관리시설물	배전함, 맨홀
기타시설물	단위면적이 150㎡ 미만인 벽화 등 각종 색채사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경관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정비 및 경관사업 추진과 실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경관계획수립제안 첨부서류 법령에 맞게 정비(제4조)
- 나.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중점경관관리구역) 추가(제18조)
- 다. 경관위원회 기능 및 구성 보완(제19조, 제20조)
- 라. 경관위원회의 소위원회 구성·운영을 위한 규정 신설(제22조의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97호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구민”을 “울산광역시 북구민”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운영자문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별표 2 제1호 기본시설 사용료의 공연장의 규모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53석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사용료 기준(제12조제2항 관련)

1. 기본시설 사용료

시설구분	규 모	기 준	사용료(원)	
			평일	토·일요일, 공휴일
공연장	453석	1일	220,000	30% 가산
		오전	45,000	
		오후	65,000	
		야간	110,000	
연습실	119.7m ²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전시실	168.9m ²	1일	30,000	
다목적교실	187.9m ²	1회	30,000	
문화교실	54.4~132.1m ²	1회	20,000	
야외공연장	224.51m ²	오전	20,000	평일과 같음
		오후	30,000	
		야간	50,000	

※ 비 고

1. 30분 이상 1시간미만 초과시 당회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시간 이상 초과시는 다음회 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공연연습, 무대설비를 위한 공연장 사용시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한다.
3.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4. 익일의 공연 또는 행사준비를 위한 23:00 이후 사용 시에는 야간 사용료의 50%로 함.
5.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2. 부대시설 사용료

시 설 명		기준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	1회	20,000	○ 조율료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어프라이트	1회	10,000	
무대시설	덧마루	1회	20,000	
	합창대	1회	20,000	
	댄싱플로어매트	1회	50,000	
음향시설	음향반사판	1회	20,000	○ 카세트 테이프 및 CD 구입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음향기본 신청시 유선마이크 2개기준이며, 추가사용시 3,000원 추가됨.
	빔프로젝트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CD플레이어	1회	20,000	
	기본시설	1회	20,000	
	유선마이크	1개	3,000	
무대조명	무선마이크	1채널	10,000	
	공연장	1회	50,000	○ 공연연습을 위한 사용시에는 기준사용료의 50%로 한다. ○ 드라이아이스액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드라이아이스기	1회	20,000	
	포오그머신	1회	30,000	
	팔로우스팟라이트	1대	10,000	
무빙라이트	1대	50,000		
냉·난방	공연장	1시간	난방 60,000 냉방 45,000	
	연습장		난방 20,000 냉방 20,000	
대·소도구 및 기타 물품		1회	취득가액의 3퍼센트	

※비 고

- 부대시설의 사용은 기본시설을 사용할 시 사용 가능하다.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 하나의 공연을 말한다.

3. 문화예술강좌 수강료

구 분	기 준	수강료	비 고
일반강좌	주1~2회 2시간	월50,000원이하	○ 재료비는 본인 부담한다. ○ 강좌시간 및 회수에 따라 금액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특 강	주1~2회 2시간	월20,000원이하	

4. 어린이 놀이방 이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수강생자녀	1인 1시간	500원
일반자녀	1인 1시간	1,000원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약칭사항 수정(제1조)

- “구민”을 “울산광역시 북구민”으로 함

나.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운영자문위원회 설치(제5조)

다. 공연장 규모 수정(제12조 별표2)

- 공연장 “482석”을 공연장 “453석” 으로 함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의결된 울산광역시 북구 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109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공직자로서 모든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 대한 책임을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해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4.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5.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6.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공적기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하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검직신고 등)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검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하는 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의원의 검직이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에 위반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장은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검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자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해당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검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검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 례 대 표	
	한 자		생년월일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 명					생년월일				
수 의	총 명								
계약체결	본인 관련자 명				본인, 직계 존·비속 명				
제한	배우자 관련자		유		배우자, 배우자 직계 존·비속 명				
관련자	명		무		-				
연번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 타
1									
2									
3									
4									
5									
6									
7									
8									
9									
10									

-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원 (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 귀하

[별표]

징 계 기 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겸직신고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법 제36조제2항 위반)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겸직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 위반 	<p>공개사과, 출석정지 (상임위원회 변경)</p>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 체결제한 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p> <p>경고, 공개사과</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p>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p>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요구 확대에 따라 지방의원의 겸직 관련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겸직신고 관련 서식 변경(제5조)

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및 관련 서식 명시(제7조)

다. 관리인 등 겸직 금지 범위 구체화(제8조)

라. 징계 관련 규정 구체화 및 징계기준 신설(제9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
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38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합계	합계		607	448	14	42	9	94(4)
	정무직		1	1				
	일반직		605	446	14	42	9	94(4)
	별정직		1	1				
정무직	구 청 장		1	1				
일	계		605	446	14	42	9	94(4)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4	3		1		
		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2	1		1		
반 직	5급	소계	37	22	3	3	1	8
		행정	24	14	3		1	6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	1				
		의무	2			2		
		시설	3	3				
		농업/해양수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6급	소계	123	98	3	8	2	12	
		행정	61	48	3	1	1	8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2	2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2	2					
		행정/공업	2	2					
		행정/해양수산	1	1					
		세무	2	2					
		전산	1	1					
		사회복지	7	3					4
		공업	2	1				1	
		농업	2	2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진료	1					1	
		공업/환경	1	1					
		시설	14	14					
		방송통신	1	1					
		운전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7급	소계	189	153	4	13	3	16
		행정	81	62	3	1	3	12
		행정/세무	2	2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1					1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3	3				
		세무	9	9				
		전산	2	2				
		사회복지	9	6				3
		사서	3	3				
		숙기	1			1		
		공업	4	4				
		공업/환경	2	2				
		농업	3	3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녹지	4	4				
		수의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의료기술	3				3	
		간호	5				5	
		보건진료	1				1	
		환경	3	3				
		시설	27	27				
		방송통신	4	4				
		운전	3	3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8급	소계	184	122	2	16	3	41	
		행정	69	42	1			26	
		행정/세무	3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7	5					2
		행정/사서	3	3					
		행정/공업	2	2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5	5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	7	7					
		전산	3	3					
		사회복지	18	6					12
		사서	3	3					
		공업	4	1			1	2	
		농업/해양수산	1	1					
		녹지	2	2					
		해양수산	2	2					
		보건	6	2				4	
		보건/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4					4	
		간호	5					5	
		환경	1	1					
		시설	20	20					
		방송통신	4	3					1
		운전	7	6				1	
		방재안전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동
일 반 직	9급	소계	<u>67</u>	47	2	1	0	<u>17(4)</u>
		행정	31	19				12(4)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u>3</u>					<u>3</u>
		행정/사서	1	1				
		세무	2	2				
		사회복지	<u>8</u>	6				<u>2</u>
		사서	4	4				
		속기	1		1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2	2				
		보건	2	2				
		환경	1	1				
		시설	6	6				
		방송통신	1	1				
		운전	2		1	1		
별 정 직	계		1	1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입.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주민 행정수요 대응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정원 일부를 조정하여 조직·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07명(변동 없음)

나. 정원 조정

- 동 사회복지 9급 $\Delta 4 \Rightarrow$ 사회복지 8급 증4
- 동 행정·사회복지 9급 $\Delta 1 \Rightarrow$ 행정·사회복지 8급 증1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539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에서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금품등의 수수”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한다.

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 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 목록

연번	구분	서 식 명	서식호수	근 거 법 령
1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별지 제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4조제1항
2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
3	-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별지 제3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1항
4	-	이해관계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2항
5	-	의견서	별지 제5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3항
6	-	업무 담당 공무원의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4항
7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확인·조치 내역서	별지 제7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제7항
8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서	별지 제8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2제1항
9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의6제2항
10	-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제1항
11	-	금품등 수수 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4항
12	신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별지 제11호의2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제2항
13	-	외부강의등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2항 및 제15조제4항
14	-	초과사례금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6항
15	-	반환비용 청구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제7항 및 제21조제3항
16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제4항
17	-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9조제2항
18	-	수수 금지 금품등 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1항
19	-	금품등 인도확인서	별지 제18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5항
20	-	금품등 폐기처분 동의확인서	별지 제19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5항
21	-	금품등 관리대장	별지 제20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21조제6항
22	-	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21호서식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23조제4항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이 개정(2018. 12. 24. 시행)됨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와 감독기관의 피감기관에 대한 부당한 요구를 금지하는 등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제13조의3 신설)

- 부당 행위(갑질)의 개념, 부당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제14조의2 신설)

- 감독기관의 해외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된 부당한 지원 및 과잉의 전 제공 요구 등 금지, 피감기관 공직자의 거부 조치 등

다. 행동강령책임관의 상담업무 추가(제18조제1항)

- 신설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를 상담업무에 추가

라.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 구체화(제22조제3항)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40호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중 “재산관리관지정”을 “재산관리관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4호 및 제7호 중 “업무주관과장”을 각각 “업무주관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1호”를 “제1호”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감정평가법인”을 “감정평가업자”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하여 감정평가 의뢰 대상(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업자) 확대 (제18조제2항)
- 나. 「울산광역시 복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개정사항 반영(제2조제2항)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41호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2조제2항의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다.

제20조(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인 평가표) 조례 제3조제3항의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인 평가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인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영 제74조의2제6항의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 13호 서식에 따른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9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	------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 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 제1호 및 울산광역시 복구 구세 징수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귀하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인 평가표

사업자명	
------	--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 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업 무수행 능력 (50)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 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 계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 74조의2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성별	남 <input type="checkbox"/> 여 <input type="checkbox"/>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제9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에서 예술품등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및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개정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제19조)
- 나. 예비 전문매각기관 신청인 평가표(제20조)
- 다.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제21조)
- 라. 매각재산의 인수증(제22조)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이등권 (인)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 규칙 제542호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버스 및 택시 정류소”를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로, “정류소”를 “정류소 및 승차대”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표지판의 설치 등(제3조 관련)

1. 표지판은 해당 장소를 이용하거나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되어야 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다음과 같다.

가. 도시공원 표지판



※ 상기 도면은 예시임.

나. 학교 절대보호구역 표지판



다.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





※ 택시승차대 표지판은 상기 도면과 같음.

2. 표지판에 금연구역 또는 흡연구역의 경계를 표시할 때는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을 정하거나 도면 등을 활용하여 표시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명칭 변경 및 [별표] 서식 정비

2. 주요내용

가. 조문 명칭 변경(제2조)

- 버스 및 택시 정류소 →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정류소 → 정류소 및 승차대

나. [별표] 서식 정비

- 나목 학교 절대 정화구역 표지판 → 학교 절대보호구역 표지판
- 다목 버스 및 택시 정류소 표지판 → 버스 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
- 라목 어린이 놀이터 표지판(삭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이동권 (인)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 훈령 제260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개정규정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배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북구 동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제5항 관련)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동	동 합계		94		
	농소1동	계	13		
		일반직	소 계	13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u>5</u>	행정3, <u>사회복지2</u>
			9급	<u>2</u>	행정1, 행정/사회복지1
동	계		12		
	농소2동	소 계	12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u>5</u>	행정4, <u>사회복지1</u>
			9급	<u>2</u>	행정2
동	계		15		
	농소3동	소 계	15		
		일반직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2	행정1, 행정/농업1
			8급	<u>8</u>	행정5, 사회복지2, <u>행정/사회복지1</u>
			9급	<u>2</u>	행정2
동	계		10		
	강동동	소 계	10		
		일반직	5급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5	행정3, 행정/농업1, 사회복지1
			9급	2	행정2

구분		직종	직급	정원	직렬
동	효문동	계		15	
		일반직	소 계	15	
			5급	1	행정/사회복지1
			6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3	행정2, 사회복지1
			8급	<u>7</u>	행정5, 사회복지2
		9급	<u>2</u>	행정1, 행정/사회복지1	
동	송정동	계		13	
		일반직	소 계	13	
			5급	1	행정1
			6급	2	행정1, 사회복지1
			7급	2	행정2
			8급	<u>5</u>	행정2, 사회복지3
		9급	<u>3</u>	행정2, 사회복지1	
동	양정동	계		8	
		일반직	소 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3	행정2, 행정/사회복지1
		9급	2	행정1, 사회복지1	
동	염포동	계		8	
		일반직	소 계	8	
			5급	1	행정1
			6급	1	행정1
			7급	1	행정1
			8급	3	행정2, 사회복지1
		9급	2	행정1, 행정/사회복지1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에 따른, 부서별 정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 607명(변동없음)

나. 조정내용

- 농소1동 : 사회복지 9급 ⇒ 사회복지 8급
- 농소2동 : 사회복지 9급 ⇒ 사회복지 8급
- 농소3동 : 행정·사회복지 9급 ⇒ 행정·사회복지 8급
- 효문동 : 사회복지 9급 ⇒ 사회복지 8급
- 송정동 : 사회복지 9급 ⇒ 사회복지 8급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제17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을 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허가 연월일 : 2019. 6. 28.
2. 점용·사용의 목적 : 인공구조물 설치
3. 점용·사용의 장소 : 정자동 626-9번지
4. 점용·사용의 면적 및 기간
 - 가. 면 적 - 47m²
 - 나. 기 간 - 2019. 07. 01. ~ 2034. 05. 31.
5.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울산광역시장(교통기획과)
 -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하천 점용 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매곡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울산 복구 향토문화연구회

나. 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호계9길 35

3. 점용 목적 및 개요

토지의 점용(전통무예 택견 공연)

4. 점용 지역의 위치, 면적

가. 위치 : 울산광역시 복구 신천동 745-118번지

나. 면적 : 890m²

5. 점용 허가의 유효기간

2019. 07. 13. ~ 2019. 07. 13. (1일간)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복구 화산3길 2 외 6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7.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J1	울산광역시 북구	화산3 길 2	2019-07-04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2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산 47	울산광역시 북구	농서로 439	2019-07-04	예전지명인농서 에위치하여도로 명을부여하였다.	2009-04-09
3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동 123	울산광역시 북구	시례새 터길 254	2019-07-04	기존자연마을인 시례새터마을에 위치하여도로명 을부여하였다.	2004-08-09
4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981-2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로 116	2019-07-04	동대산인근에위 치한구획단지내 지역이므로도로 명을부여하였다.	2001-03-22
5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903-6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 4길 11	2019-07-04	당수나무가있는 당수골명칭사용 하여서도로명을 부여함.	2017-05-04
6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지구 D19B 7L	울산광역시 북구	송정18 길 6	2019-07-04	옛 지명으로 현재도 사용	2018-05-10
7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684-2 외 1	울산광역시 북구	이화1 길 9-1	2019-07-04	기존자연마을인 이화마을에위치 하여도로명을부 여하였다.	2004-08-09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구 관내 도로명주소 변경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새로 부여된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변경사유
화봉동 72-1	화산2길 22	2019. 7. 4.	송정지구택지개발
화봉동 72	화산2길 24	2019. 7. 4.	송정지구택지개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7. 4.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 고시

송정택지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도로구간 및 도로명 폐지사항을 도로명주소법 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복구청장

1. 고시일 : 2019. 7. 4.

2. 고시방법 : 공보, 홈페이지, 게시판

3. 고시내용

가. 붙임 조서 및 도면과 같음

나.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 (www.bukgu.go.kr) 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폐지 조서 및 도면

□ 도로구간 폐지 조서

위계	도로명	시작지점	끝지점	길이 (m)	폭 (m)	기초간격 (m)	기초번호	유사도로명	중심선	폐지사유	행정구역
길	덕거리길	송정동 산28	화봉동 산35-4	1,180	4	20	1-120	덕곡길 더덕골길	노선도참조	송정지구 택지개발	송정동

□ 도로구간 노선도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19 - 161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우리구 건물의 멸실 등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4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도로명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 사유
시례새터길 250-1	시례동 123	2019. 7. 4.	건축물멸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복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9. 7. 4.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